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기획재정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규정과 함께 시행(시행일 : 2010.1.1일)합니다

- 다 음 -

제7-8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3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한다.

제7-9조제5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7-3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의 이체

제7-37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한다.

제7-37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의 이체.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한국은행총재, 전국은행연합회장(각 외국환은행장), 한국예탁결제원장(국제서비스팀)
금융감독원장(외환조사팀장)

서기관 12/23
오재우 외환제도과장 **이후명** 국제금융국장 **김익주**

협조자

시행 외환제도과-736 (2009. 12. 24.) 접수
우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 / <http://www.mosf.go.kr>
도과 전화 02-2150-4753 전송 02-503-9278 / kongmu@mosf.go.kr / 대국민공개
"녹색은 생활이다"